

## FSS/2112-27 : 자산수증이익 허위계상

- 쟁점 분야: 자산수증이익
- 관련 기준: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(재무제표 표시)
- 결정일: 2012년
- 회계결산일: 2011.1.1~2012.3.31.

### 1. 회사의 회계처리

A사(이하 ‘회사’)는 전기자동 제어장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, ‘11년 12월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제공한 문방구어음 25억원을 미수금 및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였다.

’12년 2월 회사의 실질사주 B는 회사 계좌에 25억원을 입금하여 미수금이 회수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고, ’12년 3월 회계감사가 종료된 이후에 회사 통장에서 27억원을 인출하였다.

### 2.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

회사는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’11년 대표이사가 회사에 제출한 문방구어음을 근거로 자산수증이익 25억원을 허위계상하였다.

### 3.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

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(재무제표 표시) 문단 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,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,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‘개념체계’에서 정한 자산, 부채,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,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.

②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 회피 목적으로 자산 및 수익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허위의 거래를 통해 미수금 및 자산수증이익을 허위계상하였다고 판단하였다.

### 4. 감사절차 미흡사항

\* 자산수증이익의 입금내역 확인 등 감사절차 수행사실과 감사의견(한정)을 감안하여 감사인 미지적

① 회계감사기준 240(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)에서는, 기업의 경영진 및 지배기구의 정직성과 성실성에 대한 감사인의 과거 경험과 관계없이, 부정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감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여야 하며 감사 중 식별된 상황으로 인해 문서가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문서 내의 문구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다고 믿는다면,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② 감사인은 ‘12년 3월 감사보고서 발행 전에는 문방구어금 거래와 관련한 자금 출금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거래를 부인하기 곤란하였으나, 거래의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음에 따라 관련 거래를 감사보고서 강조사항에 기재하였다. 감사보고서 발행 후 자산수증이익으로 입금된 현금이 인출된 사실을 인지하였고 자산수증이익을 제거하여 ’11년 재무제표를 수정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였으나,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‘12년 5월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고 감사의견을 한정으로 변경하였다.

## 5. 시사점

감사인은 관리종목 지정우려 등 회사의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자산수증 거래 등 통상적이지 않는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, 부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위험에 대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관련 자금거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, 필요시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으로 기재하거나 감사의견에 반영하는 등 감사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.